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신속하고 자유롭게 음성, 데이터, 영상 등 정보 교환이 가능해져, 뉴스통신사업 등록을 위한 정보통신체제 요건 중 "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"(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)와 "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"(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)를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준수비용을 과도하게 높이는 측면이 있는 바, 관련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00. ~ 2023. 1. 00.) 결과, 이견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”을 “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등록)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	제5조(등록) ① ----- ----- ----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말한다.
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	1. (삭 제)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	2. (삭 제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218